

학생생활관 내 흡연장 폐쇄 안내

최근 흡연으로 인한 민원 증가 및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전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학생 생활관에서도 기존흡연장을 폐쇄하고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
※ 생활관 내 흡연 적발 시 벌점부여 및 퇴사 조치, 향후 입사 제재.

※ 생활관 내 흡연자 신고 시 상점부여.

※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7호 [고등교육법]에 따른 학교의 교사는 금연구역.

(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에 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)

1. 동,서부 학생생활관 폐쇄구역

구분	폐 쇄 구 역	비고
동부캠퍼스	2층 정보검색실 우측 테라스 / 2층 세미나실2 테라스 / 3층 정원(A동,B동)	
서부캠퍼스	4층 테라스 / 9층 옥상	

2. 학생생활관 내규

1) 학생생활관 사생 수칙 내규 제27조(벌점)

제2항. 퇴사처분

가.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중 퇴사에 해당되는 경우

나.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

제3항. 강제퇴실조치 사생은 직후학기 선발 불가

2) 학생생활관 사생 수칙 내규 제28조(상/벌점 기준)

[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: 벌점 10점(경고)]

2024.03.28.

학 생 생 활 관